

닭고기 등급판정 살펴보기

농림부는 최근 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2004.8.17)되고 소도체의 육량등급 판정기준인 육량지수 산식 및 육량등급별 지수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고시된 내용중 닭고기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

1. 용어의 정의

- ① “축산물”이라 함은 소·돼지·닭의 도체 및 계란을 말한다.
- ② “도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된 소·돼지·닭을 말한다.
- ③ “벌크(Bulk)포장”이라 함은 가금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된 닭을 중량에 따라 일정 수량으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 ④ “롯트(Lot)”라 함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하여 닭도체 또는 계란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종류 등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한다.

2. 제4장 닭도체 등급판정(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농림부고시 제2004-66호)

제14조(닭도체의 등급판정)

- ①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닭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은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표본판정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등급판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전수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판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수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닭도체를 한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
2. 표본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본판정방법에서 롯트의 벌크포장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는 [별표12]와 같다.

제15조(닭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 ① 닭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13]과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14]와 같다.
- ② 닭도체등급판정의 결과는 절단육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표시 및 그 절차는 도체의 경우와 같다.
- ③ 등급판정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롯트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등급판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16조(닭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 ①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별표15]와 같이 구분한다.
- ② 등급판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추출된 닭도체에 대하여 중량을 칭량(稱量)하여, 중량범위에서 2%이상 미달하는 닭도체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제17조(닭도체 등급의 재판정 신청)

- ① 신청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이 보류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닭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급판정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표본의 크기 보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할 수 있다.

제18조(닭도체의 등급표시)

- ① 닭도체의 등급표시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0]과 같이 등급판정일자,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인영(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성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C

[별표 12] 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제14조제4항관련)

(단위 : 상자)

벌크포장 수	표본의 크기
1 ~ 4	모두
5 ~ 50	4
51 ~ 100	5
101 ~ 200	6
201 ~ 400	7
401 ~ 600	8
601개 이상은 매 100단위 증가시	1 추가

[별표 13] 닭도체 품질기준(제15조제1항관련)

항목	품질 기준		
	A급	B급	C급
외 관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굽지 않고 좋은 외형과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의해 도체 외관의 손상이 없는 것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휘거나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의해 도체외관의 손상이 약간 있는 것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휘거나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의해 도체 외관의 손상이 많이 있는 것
비육상태	충분한 착육성을 지니며 특히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잘된 것	보통의 착육성을 지니며 특히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보통인 것	빈약한 착육성을 지니며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적은 것
지방부착	피부의 지방층이 매우 잘 발달된 것	피부의 지방층이 충분히 발달된 것	피부의 지방층이 빈약한 것
잔털, 깃털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약간의 잔털이 있다.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잔털이 일부만 퍼져있다.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잔털이 넓게 고루 퍼져있다.

	- 길이 1cm 이하의 깃털 2개 이하	- 길이 1cm 이하의 깃털 4개 이하	- 길이 1cm 이하의 깃털 6개 이하			
신선도	피부색이 좋고 광택이 있으며 육질의 탄력성이 있다.	피부색, 광택 및 육질의 탄력성이 보통이다.	피부색이 불량하고 광택이 없으며 육질의 탄력성도 없다.			
외상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이 가슴과 다리부위에는 없어야 하고, 기타 부위는 노출된 살의 총면적의 지름이 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이 가슴과 다리부위에는 없어야 하고, 기타 부위는 노출된 살의 총면적의 지름이 4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이 총면적의 지름이 가슴과 다리부위는 2cm, 기타부위는 6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변색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장축의 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장축의 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장축의 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중량규격	가슴과 다리부위	기타부위	가슴과 다리부위	기타부위	가슴과 다리부위	기타부위
13호미만	1.5cm	3cm	2.5cm	5cm	3.5cm	7cm
13호이상	2.5cm	4cm	4cm	6cm	6cm	8cm
	상처로 인한 응혈이 있어서는 안된다.					
뼈의 상태	골절 및 탈골된 것이 없어야 한다.	골절된 것이 없어야 하고, 1개의 탈골된 뼈는 허용한다.	1개 이하의 골절 및 2개 이하의 탈골은 허용한다.			
이물질 부착	없음	없음	없음			
냄새	이상취 없음	이상취 없음	이상취 없음			
도체처리	머리와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 및 허파, 식도, 기도, 모래주머니 등의 내장이 제거되고 위 내용물, 분변, 혈액, 담즙에 의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 14] 닭도체 품질등급 부여방법(제15조제1항관련)

(1) 전수 등급판정

등급	등급판정 결과
1+등급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A급 이상이어야 함.
1등급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B급 이상이어야 함.
2등급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C급 이상이어야 함.

(2) 표본등급판정

표본 닭도체의 등급판정 결과의 구성비율에 따라 신청물량 전체에 품질등급을 부여한다.

〈표본 닭도체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방법〉

등급	등급판정 결과
1+등급	A급의 것이 90% 이상이고 C급의 것이 5% 이하이어야 함(나머지는 B급).
1등급	B급 이상의 것이 90% 이상인 경우(나머지는 C급)
2등급	B급 이상의 것이 90% 미만인 경우

[별표 15] 닭도체 호수별 중량범위(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g/마리)

중량 규격	소		중소			중		대		특대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해당 호수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중량 범위	451 ~ 550	551 ~ 650	651 ~ 750	751 ~ 850	851 ~ 950	951 ~ 1,050	1,051 ~ 1,150	1,151 ~ 1,250	1,251 ~ 1,350	1,351 ~ 1,450	1,451 ~ 1,550	1,551 ~ 1,650	1,651 이상

[별도 10] 닭도체의 등급표시 예시(제18조제1항관련)

(가) 속포장용기

품질등급	중량규격
	특대 (15호, 1,451g ~1,550g)
등급판정일 :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인영	

(나) 겉포장용기


등급판정일 :